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제56호
----------	-------------

제출연월일 2006. 10. 1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06. 2.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2. 6. 15 시행한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 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2007년 예산반영
- 다. 합의 :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 라. 입법예고(2006. 6. 8.~ 2006. 6. 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제109회 - 총무위 부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①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③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④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푸드뱅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인 및 자원봉사활

동 전담 인력 1인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사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제109회 - 총무위 부록)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교육훈련) 시장은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

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지급) 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행사, 기타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민법】

제40條 (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産에 關한 規定
5.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제43條 (財團法人의 定款) 財團法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 第1號 乃至 第5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